

제10조(종전의 제9조)중 “제1호부터 제27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4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원상담
2. 공인신조 및 폐기
3.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사용 승인
4. 공인관리실태 지도점검
5. 종이문서 관리 및 정리(폐기, 이관, 보존 등)
6. 문서고 관리
7. 기록관운영에 따른 자료관리(생성, 열람)
8. 전자결재 시스템 내 전자문서 관리
9. 민원서류(인허가, 진정, 즉결) 접수
10.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11. 대외전자문서 배부
12. 전화민원 및 우편민원 접수
13. 인터넷민원(구정에 바란다) 접수 및 배부
14. 관인날인
15. 문서사송
16. 우편물 접수 및 발송
17. 민원행정 개선
18. 공무원 친절교육 등 관련업무
19. 여권 접수, 교부 및 심사
20.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계획수립 및 시행
21. 민원관련 제도 운영
22.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23.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운영
24.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25. 어디서나민원관련 업무처리
26. G4C 민원접수처리 및 수수료 정산
27.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관리
28.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수수료 정산
29.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발급
30. 인감증명 발급
31. 호적(제적) 등·초본 발급
32. 호적(제적)원부 관리
33. 호적신고서 접수 및 관리
34. 수형인명부 및 파산자 기록관리

35. 신원조회
36. 인구동태
37. 직권정정
38. 호적전산 운영
39. 기타 호적에 관한 사무
40. 납세보호관 관련사무

제11조(종전의 제10조)중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0호부터 제26호까지”를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며, “제14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호를 삭제하며,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를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제31호부터 제44호까지”를 삭제하며, “제45호부터 제46호까지”를 “제24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제47호를 삭제하며, “제48호부터 제67호까지”를 “제26호부터 제45호까지”로 하고, “제68호부터 제85호까지”를 삭제하며, “제86호”를 “제46호”로 하며, “제47호부터 제5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15.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정
47. 복권업소 지도·단속
48.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
49. 대부업에 관한 사무
50. 통신판매업에 관한 사무
51. 담배판매소매업에 관한 사무
52. 방문판매업에 관한 사무
53.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54. 재래시장인정 등록 및 관리자 지정
55. 농지일반에 관한 사무
56. 쌀소득등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
57.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사무
58. 해양수산사업 시험에 관한 사무
59.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행정의 계획 수립 시행
2. 노동단체의 지도 육성
3.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4. 노동대책회의 운영

5. 지역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6.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가. 공장 신·증설 및 이전승인
 - 나.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
 - 다.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에 관한 사무
 - 라. 입지기준확인에 관한 사무
 - 마. 공장 휴·폐업 신고 및 공장등록증명 발급
 - 바. 불법 공장 단속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
9.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선정추진
10.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의 설치운영
11. 품질경영 촉진에 관한 사무
12.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단속
13. 해외판로개척 계획수립
 - 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무
 - 나. 해외박람회 참가에 관한 사무
 - 다. 해외지사화 사업에 관한 사무
14. 계량기에 관한 사무
15. 계량증명업 등록에 관한 사무
16. 산업자원동원에 관한 사무
17.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8. 염업 관리업에 관한 사무
19. 광공업에 관한 사무
20. 가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21. 가스 안전점검 사후관리
22. 고압가스(판매, 제조, 저장, 충전업, 운반자등록)에 관한 사무
23.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및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허가 관련업무
24.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 용품제조, 충전) 사업에 관한 사무
2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26.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27.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28.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지원 및 사업기금 관련업무
29.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에 따른 사후관리 등
30.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31. 가스안전관리 제도·홍보

- 32. 특정열 사용 기자재 시공에 관한 사무
- 33.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에 관한 사무
- 34. 연료수급 및 조정
- 35.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관련사무
- 36.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무
- 37.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 38. 산업단지에 관한 사무
- 39.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 40.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안전관리
- 41.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 42.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
- 43.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관한 사무

제13조(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 2. 재난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검토·협의
- 3. 재난관련 위원회 및 각종 규정 제·개정
- 4.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 지원
- 5.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 6.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 7.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8. 이재민 관련 업무
- 9.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분석
- 10. 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
- 11.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 보고
- 12. 민방위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 13. 민방위 상황실 운영
- 14.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확인
- 15. 충무계획의 지침작성과 조정통제
- 16.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 17. 재해 및 일반구호
- 18. 재해구호물자의 출납보관 관리
- 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20. 재난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
- 21. 재난관리기금 운용
- 22. 공연행사장 안전관리대책 추진
- 23.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24.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
25. 민방위 준비명령
26. 민방위대 검열
27. 민방위 시설물 관리
28. 민방위 편성 및 교육 관리
29.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
30. 안전문화운동 전개

제14조(중전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조(주민생활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으로 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문화체육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또한, 국장 산하에 프로젝트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5조(중전의 제 12조)제4호, 제26호 및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4호부터 제44호가 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급여의 실시(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급여)
26.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책홍보·교육
2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산망 구축·관리 및 욕구조사
34.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35.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
36. 직업안내 사업자와 업무보조원의 교양 및 훈련
37. 직업소개소 허가 등
38. 취업상담 및 알선(구인구직 창구 운영)
39. 고용촉진훈련
40. 종합실업대책 계획수립 추진(총괄)
41. 실업대책 추진실적 관리(상황일지 작성)
42. 공공근로자 모집 및 관리
43. 실직자 구제시책 개발
44. 기타 실업관련 민원처리 상담

제16조(중전의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6조(복지서비스과) 복지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일반
3.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지도
4. 장애인 보장구 교부